

의안번호	2204001
의 퇴 인	임광현 의원
회 답 일	2024. 9. 23.
추 계 번호	24E33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대상 육아용품 범위 확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육아용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2025년 382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1,856억원(연평균 371억원)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의 면세확대 대상 중 이유식, 유아용 의복 및 도서에 한정된 것으로 그외 품목이 면세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정수입 감소액은 증가 가능
 -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중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안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382	-376	-371	-366	-362	-1,856	-371
- 부가가치세(74.7%)	-286	-281	-277	-273	-270	-1,386	-277
- 지방소비세(25.3%)	-97	-95	-94	-92	-91	-469	-94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현행) 신설 ※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중 - (개정안) 기저귀, 분유, <u>이유식, 의복·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 물품</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6조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2	안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효과가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함
 -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됨
- 면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해당 자료가 집계되지 않으므로 최근 매출액 또는 매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되며 자료 조사 대상 및 집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구분하여 추계
 - (국내산) 2022년까지 매출액 집계(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실태조사」)
 - (수입산) 2023년까지 수입액 집계(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대상으로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추계서에서는 육아용품으로 통계가 집계되는 이유식, 유아용 의복 및 도서에 한하여 추계
 - (추계대상) 이유식(우유기저 제외), 유아용 의복(내의 포함) 및 도서
 - 이유식의 경우 수출 및 수입 물품은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소매식료품(HS1901.10) 중 우유기저 조제 식료품(관세청 분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HS1901.10.10)을 제외한 물품(HS1901.10.90)
 - (추계제외) 기저귀, 분유, 신발, 카시트
 -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11호)에 따라 부

가가치세 면제 중

－ 신발 및 카시트는 국내·국외산 통계 미집계

□ 추계기간 동안의 국내산 매출액은 관련 영·유아 및 아동¹⁾ 인구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전제

- 영·유아 및 아동(만0~12세) 인구 관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의 추정치를 따를 것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활용
- 다만, 관련 수입산 육아용품은 최근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최근(2023년) 수입규모가 추계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중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11호

(2) 추계 방법

□ 매출액, 관련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율을 활용하여 감면액 추정

- (국내산) 국내 출하액과 수출액을 바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감면액 추정
 - － 매출액 = 출하액 - 수출액
 - － 감면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율(10%)
- (수입산) 매출액 자료가 집계되지는 않으나, 수입금액이 국내 제품 공급 시 매입액과 같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국내 매출액을 역산하고 감면액 추정
 - － 매출액 ≒ 매입액(수입액) ÷ (1 - 국내 공급 단계의 부가가치율)
 - － 매출액 추정 후, 이를 활용한 감면액 산출은 국내산의 경우와 동일

1) 연령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제2조), 유아교육법(제2조) 및 교육법(제8조)의 관련 규정 참조

- 매입세액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실제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으로 추계기간 동안 수입액의 증감률을 따르는 것으로 전제
- 부가가치율은 관련 품목이 속한 산업의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상 해당 품목이 속하는 산업의 부가가치율 적용
- 매출액 등과 관련하여 갱신된 최신 자료가 반영될 경우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

가. 국내산 육아용품

- 2020~2022년간 국내산 육아용품의 매출액은 소폭 증가 후 감소 추세
 - 추계기간에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

[표 4] 개정안 대상 국내산 육아용품의 공급가액: 2020~2022년

(단위: 억원)

구분	품목	2020	2021	2022
출하액 (A)	이유식	2,436	2,295	2,050
	유아용 의복	7,546	8,403	6,664
	유아·아동 도서	1,361	1,408	1,448
수출액 ¹⁾ (B)	이유식	11	11	9
	유아용 의복	135	122	125
	유아·아동 도서	33	28	26
국내산 매출액 (C=A-B)	이유식	2,426	2,284	2,040
	유아용 의복	7,411	8,281	6,539
	유아·아동 도서	1,328	1,381	1,422
	합계	11,165	11,945	10,002

주: 1) 관세청의 수출액 자료(미국달러 기준)에 해당 연도의 원/미국달러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국내산 육아용품의 매출액 추정: 2025~2029년

(단위: 억원)

품목	2025	2026	2027	2028	2029
이유식	1,892	1,834	1,791	1,749	1,716
유아용 의복	6,106	5,918	5,781	5,644	5,537
유아·아동 도서	1,321	1,280	1,251	1,221	1,198
합계	9,318	9,032	8,823	8,614	8,451

- 2020~2022년간 낙농제품·식용빙과류, 서적·잡지·기타 인쇄물 출판업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감소 추세이며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산업

의 부가가치율은 증가 추세

[표 6] 국내산 육아용품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2020~2022년

(단위: %)

품목	관련 산업	2020	2021	2022	평균
이유식	낙농제품·식용빙과류	23.18	22.17	20.19	21.85
유아용 의복(및 부속품)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19.75	21.22	22.92	21.30
유아용 내의(편직결합)					
유아·아동 도서	서적·잡지·기타 인쇄물 출판업	40.29	40.58	38.77	39.88

자료: 한국은행의 연도별 「기업경영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유식, 유아용 의복 및 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 국내산 관련 감면액은 2025년 224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1,064억원(연평균 213억원)으로 추계

[표 7] 국내산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정: 2025~2029년

(단위: 억원)

품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이유식	41	40	39	38	37	196	39
유아용 의복	130	126	123	120	118	617	123
유아·아동 도서	53	51	50	49	48	250	50
합계	224	217	212	207	203	1,064	213

나. 수입산 육아용품

- 2020~2023년간 국내에 공급되는 수입산 육아용품의 매입액은 증가 추세

[표 8] 개정안 대상 육아용품의 수입현황: 2020~2023년

(단위: 억원)

구분	품목	2020	2021	2022	2023
수입액 ¹⁾ (D)	이유식	13	10	8	9
	유아용 의복	457	619	896	934
	유아·아동 도서	453	486	492	466
	합계	923	1,116	1,397	1,409
관세액 (E)	이유식	1	1	0	1
	유아용 의복	13	12	17	18
	유아·아동 도서	—	—	—	—
	합계	14	13	18	19

구분	품목	2020	2021	2022	2023
매입액 (G=D+E)	이유식	13	11	9	9
	유아용 의복	471	632	914	952
	유아·아동 도서	453	486	492	466
	합계	937	1,129	1,414	1,427

주: 1) 수입액은 관세청의 수출액 자료(미국달러 기준)에 해당 연도의 원/미국달러 평균환율 적용하여 환산
자료: 관세통계 및 관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0~2023년간 국내에 공급되는 수입산 육아용품의 매입액(수입액)을 바탕으로 역산한 공급가액은 증가 추세

- 완제품의 수입임을 감안해,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상 도매 및 소매업의 부가가치율 적용

[표 9] 수입산 기저귀 및 분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율: 2020~2022년

(단위: %)

관련산업	2020	2021	2022	연평균
도매 및 소매업	44.94	44.15	43.02	44.04

자료: 한국은행의 연도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0] 개정안 대상 수입산 육아용품의 공급가액 추정: 2020~2023년

(단위: 억원)

구분	품목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H=G÷(1-부가가치율)]	이유식	24	19	15	16
	유아용 의복	855	1,131	1,604	1,702
	유아·아동 도서	823	871	864	832
	합계	1,701	2,021	2,482	2,5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0~2023년간 수입산 육아용품의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액은 증가 추세

- 추계기간 동안 최근(2023년)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

[표 11] 수입산 육아용품의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액 추정: 2020~2023년

(단위: 억원)

구분	품목	2020	2021	2022	2023
매출세액 (J=H×10%)	이유식	2	2	2	2
	유아용 의복	85	113	160	170
	유아·아동 도서	82	87	86	83
	합계	170	202	248	255

구분	품목	2020	2021	2022	2023
매입세액 ¹⁾ (F)	이유식	1	1	1	1
	유아용 의복	47	63	92	96
	유아·아동 도서	1	0	0	0
	합계	49	65	93	97
부가가치세액 (K=J-F)	이유식	1	1	1	1
	유아용 의복	38	50	69	75
	유아·아동 도서	82	87	86	83
	합계	121	137	155	158

주: 1) 매입세액은 통관수입 과정에서 실제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 이유식, 유아용 의복 및 도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국외산 관련 감면액은 2025년 158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792억원 (연평균 158억원)으로 추계

[표 12] 국외산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정: 2025~2029년

(단위: 억원)

품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이유식	1	1	1	1	1	4	1
유아용 의복	75	75	75	75	75	373	75
유아·아동 도서	83	83	83	83	83	415	83
합계	158	158	158	158	158	792	158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육아용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2025년 382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1,856억원(연평균 371억원)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의 면세확대 대상 중 이유식, 유아용 의복 및 도서에 한정된 것으로 그외 품목이 면세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정수입 감소액은 증가 가능
 -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중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안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382	-376	-371	-366	-362	-1,856	-371
- 부가가치세(74.7%)	-286	-281	-277	-273	-270	-1,386	-277
- 지방소비세(25.3%)	-97	-95	-94	-92	-91	-469	-94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